

배포 2026. 6. 12.(금)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2.(금) 12:00
(지면) 2026. 6. 13.(토) 조간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고 혁신은 키운다

-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
- 대학-전문대학(전공심화) 간 교육과정 공동학위 수여, 부총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가능, 대학의 교자·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등의 규제특례 부여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2일(금)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규제특례 내용·대상 추가)하여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 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대학)에 한정하여 부여하였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2026년 규제특례 부여 주요 내용 >

분야	규제특례 내용	특화지역
① 학사 제도	통합대학 학위 표준현장 실습학기제	대전·세종·충남 강원,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국립대의 주요보직 자격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부산,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② 교원 인사	비전임교원 채용절차 및 정년기준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강사 강의시간	대구·경북
③ 대학 경영	교자·교사 임차 활용 범위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이번 규제특례의 분야별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사 제도’ 관련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로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과정(학사학위 수여)

특히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예: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예:우송정보대)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 교육 인사’ 관련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대학 경영’ 관련 현재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교지의 일체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주요내용

담당 부서 <총괄>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교원인사>	대학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태경 (044-203-6830)
			사무관	최운정 (044-203-6938)
<학사제도 (일반대)>	대학학사운영과	담당자	과 장	박형식 (044-203-6845)
			사무관	유지선 (044-203-6933)
<학사제도 (전문대)>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이운식 (044-203-6415)
			사무관	배진수 (044-203-6418)
<대학경영>	국립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안주란 (044-203-6243)
			사무관	기정하 (044-203-6919)
	사립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안상훈 (044-203-6950)
			서기관	최기석 (044-203-6959)
<학사제도 (현장실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최민호 (044-203-6267)
			사무관	안나영 (044-203-6273)



붙임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주요내용

-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추가, 대상 확대

○ 신규 지정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강원 (2건)	(현행)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원칙 및 정년기준(65세) 규정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특례)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	강원대, 한림대 (공개채용만 해당)
	(현행) 국고지방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 지원비 지원비율은 최저임금의 25% 이내로 제한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 (특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25%→50%)	강원대, 한림대

○ 변경 지정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부산 (3건)	(현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최저임금의 25% 이내로 제한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 (특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25%→50%)	경성대, 동명대, 부산대
	(현행) 건축물 또는 토지 임차하여 교사·교지로 활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에서 20km 이내 및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항 2호 가목, 나목 (특례) 동일 광역지자체 내로 범위 확대	경성대
	(현행)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원칙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특례)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가능	부산대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광주·전남 (2건)	<p>(현행)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원칙 및 정년기준(65세) 규정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p> <p>(특례)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p>	전남대
	<p>(현행) 국립대 부총장은 교수 중에만 임명 가능 ※ 「교육공무원법」제27조, 「국립학교설치령」제5조의2</p> <p>(특례) 부총장 외부인사 임명 허용</p>	전남대
대구·경북 (4건)	<p>(현행)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65세로 규정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p> <p>(특례) 비전임교원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p>	경북대, 국립경국대
	<p>(현행) 건축물 또는 토지 임차하여 교사·교지로 활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에서 20km 이내 및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p> <p>(특례) 경북대, 영남이공대 : 동일 광역지자체 내로 범위 확대 대구한의대 : 영덕캠퍼스, 청도캠퍼스 추가 지정</p>	경북대, 영남이공대, 대구한의대
	<p>(현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최저 임금의 25% 이내로 제한 ※ 「대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p> <p>(특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25%→50%)</p>	경북대, 계명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대구과학대
<p>(현행)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6시간 이하(최대 9시간)로 제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제2항</p> <p>(특례) 주당 강의시간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로 확대</p>	국립경국대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대전·세종 · 충남 (5건)	<p>(현행)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부)교수 중 임명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p> <p>(특례) 주요 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p>	충남대, 국립공주대
	<p>(현행)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원칙 및 정년기준(65세) 규정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p> <p>(특례)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p>	충남대, 국립공주대
	<p>(현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최저임금의 25% 이내로 제한 ※ 「대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p> <p>(특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25%→50%)</p>	충남대, 국립공주대
	<p>(현행) 상이한 학교 유형으로 대학-전문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 제약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p> <p>(특례)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신규인가 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 가능</p>	충남대, 국립공주대
	<p>(현행)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교지로 활용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5년 이상) 원칙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p> <p>(특례) 지자체 위·수탁 계약 시설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임차권 5년 유지' 요건의 예외 적용</p>	순천향대